

[특허분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정 후 균등 주장: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435 판결



특허발명

【청구항 1】 노후관로(200) 내경에 도포되어 있는 도장재를 긁어 제거함과 동시에 도장재가 제거된 상기 노후관로 내경에 도장재를 라이닝 처리하는 노후관로 변형에 따른 작업성이 용이한 2액형 도료 도장장치에 있어서(이하 '전체부'라 한다), 외곽 모서리를 따라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지축(10)들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지지축(10)들 사이사이에 연결 설치되며 외곽 골조를 구성하는 실린더(20)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지지축(10)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플레이트(30)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고정플레이트(30) 아래에 위치하는 하부틸팅플레이트(52)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고정플레이트(30) 위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상기 실린더(20) 위에 올려지며 상기 하부틸팅플레이트(52)와 프레임(53)으로 연결 구성되는 상부틸팅플레이트(54)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상부틸팅플레이트(54)의 양쪽에 관통 형성되는 가이드장공(56) 및 상기 가이드장공(56)을 관통한 상태에서 상기 상부틸팅플레이트(54)를 상기 고정플레이트(30)에 체결 고정시키는 볼트(58)로 구성된 틸팅수단(50)과(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상부틸팅플레이트(54)에 지지되는 바퀴축(41)과(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바퀴축(41)의 전, 후방에 결합되며 상기 노후관로

(200)의 내경에 접촉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으로 구동하는 모터(42)(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상기 모터(42)의 축에 결합되는 구동폴리(44)(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 상기 바퀴축(41)에 결합되며 상기 구동폴리(44)와 체인(48)으로 연결되어 상기 모터(42)의 동력을 전달받는 피동폴리(46)(이하 '구성요소 10'이라 한다); 상기 바퀴축(41)의 전, 후방에 결합되며 상기 모터(42)의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며 장치를 전진 이동시키는 바퀴(40)로 구성하며(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실린더(20)로 구성된 외곽 골조의 센터에는; 수평으로 길게 누운 상태로 설치되는 지지프레임(72)과(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지지프레임(72)에 지지되며 외부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2액형 도료를 공급하는 제1, 2호스(74, 76)와(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지지프레임(72)의 선단에 설치되며 상기 제1, 2호스(74, 76)에서 공급되는 2액형 도료를 혼합시킨 상태에서 도장재가 제거된 상기 노후관로(200)의 내경으로 분사시켜 라이닝²⁾ 처리하는 분사노즐(78)(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로 구성된 라이닝 수단이 더 포함되어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노후관로 변형에 따른 작업성이 용이한 2액형 도료 도장장치.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 심판 진행 중 보정사항

즉, 상기 제1,2 플레이트(120,128)가 1°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1,2 플레이트(120,128)에 조립된 바퀴축(122a,122b)도 1°기울어져 있어 자연스럽게 도장장치는 상수도관(50)의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상부틸팅플레이트와 가이드장공 및 볼트로 구성된 틸팅수단의 기술구성이 없지만, 확인대상발명의 도장장치는 노후관로의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⁵⁾.

상기 제1 플레이트(120)의 저면에는 제3 플레이트(120a)가 일체로 형성되며, 내부가 비어있는 사각형태로 한 몸체로 제작된다. 상기 제3 플레이트(120a)의 저면에는 모터(1

5) 밑줄친 부분은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2017. 3. 10.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의해 추가된 부분이다. 이하 같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 균등 불인정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은 '상부틸팅플레이트 양쪽에 가이드장공을 관통 형성하고, 가이드장공을 관통한 상태에서 볼트로 상부틸팅플레이트를 고정플레이트에 체결 고정시키는 틸팅수단'이고, 이에 의하면 상부틸팅플레이트는 그 양쪽에 관통하여 형성된 가이드장공을 관통하는 볼트에 의하여 고정플레이트에 체결 고정된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제1, 2 플레이트가 실린더의 상면에 약 1° 기울어진 상태로 용접 고정된다. 이에 원고는 구성요소 6의 틸팅수단은 확인대상발명에서 '도장장치가 상수도관 내부로 진입할 때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 2플레이트가 실린더 상면에 약 1° 기울어진 상태로 용접 고정된 구성'과 균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의 틸팅수단 내지 이와 균등한 구성요소가 결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틸팅(tilting)'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기울이는', '기울어지게 하는'의 의미를 가지며, 기술적으로는 통상 '각도의 범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특허발명의 명

세서에도, "고정플레이트에는 바퀴의 각도를 한쪽 방향으로 틀어주는 틸팅수단이 더 설치된다. 틸팅수단은 바퀴를 한쪽 방향으로 일정각도 비틀어주도록 하여 바퀴가 노후관로 내경을 타고 회전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틀러진 각도만큼 앞쪽으로 전진하며 장치를 전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상기한 구성의 틸팅수단은 바퀴의 각도를 비틀어주고자 할 때, 도 6에서 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볼트를 풀어 상부틸팅플레이트의 고정을 해지한 다음, 바퀴를 잡고 원하는 각도로 비틀어주면 볼트를 기점으로 해서 상부틸팅플레이의 가이드장공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상부틸팅플레이트에 고정되어 있는 바퀴축을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비틀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틸팅'이라는 용어의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 기술적 의미 및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6의 '틸팅수단'은 도장장치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바퀴축의 각도를 일정각도 비틀어줌으로써 바퀴축의 각도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②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제1, 2 플레이트가 실린더 상면에 약 1° 기울어진 상태로 용접 고정된 구성'은, 제1, 2 플레이트가 실린더 상면에 용접 고정됨으로써 바퀴축이 장착된 제1, 2 플레이트의 각도 범위를 조절할 수가 없다.

③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구성요소 6의 틸팅수단은 바퀴축을 원하는 각도로 비틀어줄 수 있어 사용자가 도장장치의 전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나, 확인대상발명은 바퀴축이

장착된 제1, 2 플레이트가 용접 고정되어 있어 바퀴축의 각도 범위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
자가 도장장치의 전진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④이처럼 구성요소 6의 틸팅수단과 그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의 작용효과가
다른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가 구성요
소 6을 치환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양자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435 판결

변리사23년/변호사 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